

장안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2021.6.17. 조합설립인가 된 성수동2가 269-28번지 장안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이 있어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12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소규모재건축사업

나. 명 칭: 장안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: 성수동2가 269-28

3. 정비구역의 면적: 2,405m²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명 칭: 장안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
나. 소재지: 성수동2가 269-28, 가동 209호

5. 조합설립인가일: 2021. 6. 17.

6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: 2022. 8. 12.

7. 취소사유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